



해외통관애로

베트남 법령에 따른 강제 인증 및 수입 요건 개관

박민설 | KOTRA 하노이 무역관, 한-베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관세사/전문위원

E REPORT

베트남 법령에 따른 강제 인증 및 수입 요건 개관



박민설

KOTRA 하노이 무역관
한-베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관세사/전문위원



1 들어가며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199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빠른 속도로 양국 간의 교류를 확대해 왔으며 특히 경제 분야에서 발전이 두드러져 2023년 양국의 교역량은 약 천억 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또한 2022년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며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두 국가 간의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베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는 FTA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해외에 설립 및 운영하고 있는 센터로, 베트남에는 하노이와 호치민 2곳에 2016년도 3월부터 개소하여 베트남 진출 기업들의 FTA, 관세, 통상 등 관련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의에 대한 상담 및

애로해소 활동을 이행하고 있다.

양국 교류가 활발한 만큼, 베트남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많으나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베트남의 통관은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통관과 관련된 법령 및 시행령, 시행 규칙의 개정주기가 일정하지 않고,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의 모호한 해석 및 일관적이지 않은 집행으로 인한 여러 애로 사례가 본 센터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수출 물품에 대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질의가 접수되고 있는데, 베트남의 경우 여러 법령에 이러한 수입 요건이 산재하여 규정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2 수입 금지 품목

베트남은 국가 보안, 소비자 건강 및 안전, 사회 질서 등을 조건으로 수출입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의 부록 1에서 정부에서 발행한 수출입 금지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표 1] 참고).

이러한 수출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분석, 연구, 약품 생산, 국가 보안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한 수입만 총리의 허가를 받을 경우 수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에서 취급하는 물품이 실제 수입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 품목별 관할 부처의 시행 규칙상 HS code와 물품 명세의 확인이 필요하다.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이러한 수입 금지 대상 물품 중에 대부분의 중고 상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고 의류, 중고 통신 장비, 중고 소비재 등의 경우 대부분 수입 불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기에 관련 기업의 유의가 필요하다.

그중 많은 질의가 있는 중고차의 경우, 교통부의 관할 품목으로 중고 오토바이는 연한 제한이 없이 수입 금지 대상이며, 승객 수송용 사륜차의 경우 생산연도로부터 5년이 넘는 물품을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다만 중고 차량의 경우 별도로 수출입세법 시행령으로 규정된 추가 관세(일정 추가금액 혹은 150%의 추가 관세율이 종류에 따라 부과) 납부 의무 및 환경 기준 충족 및 품질 인증서 제공 등 규제를 두고 있어 수출 전 유의가 필요하다.



[표 1] 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상 베트남 수입 금지 품목 리스트

연번	명세	관할 부서
1	무기, 탄약, 폭발물(산업용 폭약 제외), 군사기술 설비	국방부
2	각종 폭죽(해양 안보 목적의 신호용 폭죽 제외), 주행 속도 측정기를 방해하는 설비	공안부
3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된 특정 화학물질	산업무역부
4	중고 소비재, 의료기기 및 교통 수단	산업무역부
5	베트남 국내 보급 및 유통이 금지되는 문화 상품	문화체육부
6	중고 정보 통신 제품(중고 IT 제품)	정보통신부
7	- 베트남 국내 보급 및 유통이 금지된 출판물, 우표 - 전파법상 기준을 미충족하는 무전장치 및 전자파 발생장치	정보통신부
8	- 오른쪽 핸들 차량 - 프레임이나 엔진넘버가 지워지거나 수정된 오토바이 및 사륜차, 트레일러 등	교통부
9	- 차량 프레임, 타이어 및 튜브, 부속품 및 엔진, 샤시 등으로 중고인 것 - 구조가 개조된 중고 차량 - 중고 앰볼런스 - 중고 차량,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및 승객 수송용 사륜 차량으로 생산연도로부터 5년이 넘은 차량	교통부
10	로테르담 협약 부속서 3의 화학물질	농업농촌개발부
11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농업농촌개발부
12	CITES 협약에서 규정된 상업목적 수출 금지 동식물	농업농촌개발부
13	고철, 폐기물, C.F.C를 사용하는 냉장장치	자원환경부
14	석면을 포함하는 상품 및 자재	건설부

출처: 69/2018/ND-CP(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 2018/05/15) 하노이무역관 해석, 편의를 위해 원문 일부 요약

3 조건부 수입 품목

수입 금지 품목 이외에 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 부록 3에서 허가증을 갖추거나 특정 조건을 갖춰야 수출입이 가능한 품목의 리스트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품목에 포함된 물품의 경우, 각 정부부처에서 세부 물품 리스트 및 Hs code와 허가 취득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기업의 많은 문의가 있는 수의용 의약품, 비료, 사료(농업농촌개발부 관할) 및 의약품, 식품, 화장품(보건부 관할) 이외에도 인쇄 기기, 원료용 금과 같은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 조건을 규정하고 있어 세부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



[표 2] 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상 베트남 조건부 수입 품목 리스트

연번	관할 부서 및 절차	해당 물품
1	산업무역부 : 수입허가서	- 산업무역부에서 발행하는 자동수입허가 대상 리스트에 해당하는 품목(2012년 리스트 폐지) - 소금, 가공 전 담배, 가공류의 알, 원당 - 산업용전구체
	산업무역부 : 화학물질법 규정에 따른 절차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포함 상품
	산업무역부 : 담배의 생산 및 경영에 관한 규정	담배 원료, 담배 완제품, 담배말이용 종이, 담배 생산 분야에서 사용되는 설비 및 부품
2	교통부 : 수입 허가	해양 안보 목적의 신호용 폭죽
3	농업농촌개발부 : 시험 허가서 혹은 수입 허가서	베트남에서 등록되기 전, 혹은 유통 허가를 받지 않은 다음의 것 - 동물용 의약품 및 동물용 의약품 생산용 원재료, 수의학용 생물 제재, 미생물 등 - 연구, 전시, 시험 목적 등으로 수입되는 농약 및 특성 독성물질 함유 농약 - 가축 품종, 곤충, 식품 품종, 유기체 - 가축 사료 및 수생 동물 사료 - 연구, 샘플 목적 등의 비료
	농업농촌개발부 : CITES 수입 절차	CITES 대상 동물의 비상업적 수입
	농업농촌개발부 : 관련 시행 세칙상 리스트 규정	관련 세칙에서 수생 동물 종자, 식물 종자 등에 대해 일반 수입 가능 품목, 조건부 수입 가능 품목, 허가증 대상 등으로 나누어서 관리
4	자원환경부 : 수입 조건 및 수입 기준 충족	폐기물
5	정보통신부 : 출판물 및 잡지에 관한 법령 규정 충족	책, 신문, 잡지, 그림, 사진, 달력 등
	정보통신부 : 수입 허가서	- 우표, 우표 간행물 - 사이버 정보 보안 제품

연번	관할 부서 및 절차	해당 물품
5	정보통신부 : 인쇄활동에 대한 규정 준수	인쇄 산업을 위한 프레스 시스템 및 각종 인쇄기기
6	문화체육관광부 : 수입품 내용물 승인	- 모든 매체에 기록된 영화 작품, 공연 예술 및 기타 시청각 제작용, - 예술 작품, 사진 작품
	문화체육관광부 : 수입 물품 목록 확인 서류	비디오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된 전자 게임기, 승부를 겨루기 위한 전자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된 전자 게임기, 전문 카지노 장비
	문화체육관광부 : 사양 기준 충족	어린이 장난감
7	중앙은행 : 수입 허가	원료용 금
8	보건부 관할 품목	표 3에서 후술

출처: 69/2018/ND-CP(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 2018/05/15) 하노이무역관 해석, 편의를 위해 원문 일부 축약 기술

위의 조건부 수입 가능 품목 중 우리 기업의 가장 주력이 되는 수출 품목 대부분은 베트남 보건부 관리 대상에 해당한다.

의약품, 식품 및 식품 용기, 화장품, 살균제 등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소비재들 대부분이 보건부 산하에서 각 기관에 수입 전 사전 유통 등록을 한 후에 정식 수입이 가능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통 등록 절차는 베트남 현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기에, 바이어에게 물품 관련 서류를 전달하여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등록 과정에서 소량의 샘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등록이 완료되고 유통등록번호를 받으면 이를 물품 라벨에 표시하게끔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바이어와의 협의를 통해 인증 절차 진행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표 3] 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상 베트남 조건부 수입 품목 중 보건부 관할 품목 리스트

연번	명세	관할 부서 및 조건
1	베트남 유통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의 것 - 특별관리대상 의약품 제외 의약품, 의약품 원료, 의료기기 - 가정용 및 의학용 살충제, 살균제	보건부 관리 대상으로, 건별 확인이 불필요하며, 수요에 따른 수입 가능
2	특별관리대상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보건부 수입 허가서
3	베트남 유통등록이 되지 않은 다음의 것 - 의약품, 의약품 원료 - 연구 및 분석용 및 사용 안내용, 수리용 의료기기 - 무상원조 목적의 의료기기 - 개인사용목적의 의료기기	보건부 수입 허가서
4	표준물질, 의약품과 직접 닿는 포장지	보건부 수입 허가서
5	식품안전법령 규정에 따른 보건부 관할 수입 식품	보건부 관리 대상으로, 기술 규정과 합치 하다는 보고(công bố hợp quy) 및 식품 안전규정 부합 보고, 국가 검사
6	연구용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제품	보건부 수입 허가서
7	그외 특정한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품 및 원조 목적 제품(목적에 맞게 수입되는 선물용 등)	보건부 수입 허가서
8	화장품	기술표준합치보고(công bố tiêu chuẩn)

출처: 69/2018/ND-CP(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 2018/05/15) 하노이무역관 해석, 편의를 위해 원문 일부 축약 기술



4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입 품질 검사 대상

베트남은 2007년도 제품 및 재화의 품질 관리법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품질을 공포된 적용 기준(applicable standards) 및 관련 기술 규정(technical regulations)에 따라 관리하며 상품을 Group 1 및 Group 2로 나누어 관리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 1) Group 1: 생산자들이 공포(announced)한 적용 표준에 따라 관리.
- 2) Group 2: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promulgated)한 기술 규정 및 생산자들에 의해 공포한 적용 표준에 따라 관리. 해당 품목의 경우 정부 각 부처에서 별도의 리스트 발행.

제품 및 재화의 품질 관리법에 따라 Group 2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1) 물품이 기술 규정과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인된 기관의 인증이 있어야 하며, 2) 물품이 기술 규정과 합치한다는 보고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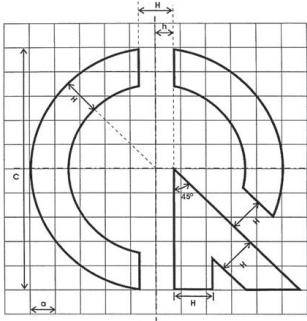
먼저, 제품에 대해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생산 과정 및 완제품과 관련된 기술 규정을 충족하였음에 대한 인증(chứng nhận hợp quy)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 충족이 필요한 국가기술 규정(QCVN)이나 인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처별 세부 시행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품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 유통 전 해당 물품이 규정을 충족하였음에 대해 기관 및 개인의 자체 보고(công bố hợp quy) 과정이 이행된 후, 시장 유통 시 흔히 “CR MARK”라 불리는 인증 마크(Dấu hợp quy) 부착이 필요하다. 이들 Group 2의 물품들에 대해서는 수입 시 강제 품질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수입 통관 당시 국가기술 규정 충족 여부, 자체 보고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검사 후 통관이 가능하기에, 통관 전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 기업의 주력 품목인 전기전자 제품이 Group 2 대상에 해당하기에 관련 기업의 과학 기술부에서 발행하는 기술 규정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에서 전기용품에 관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으로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활 전기 안전(Electrical safety) 및 전자파 적합성(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확인 대상 품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4] CR Mark 이미지

CR Mark 이미지	CR Mark 기본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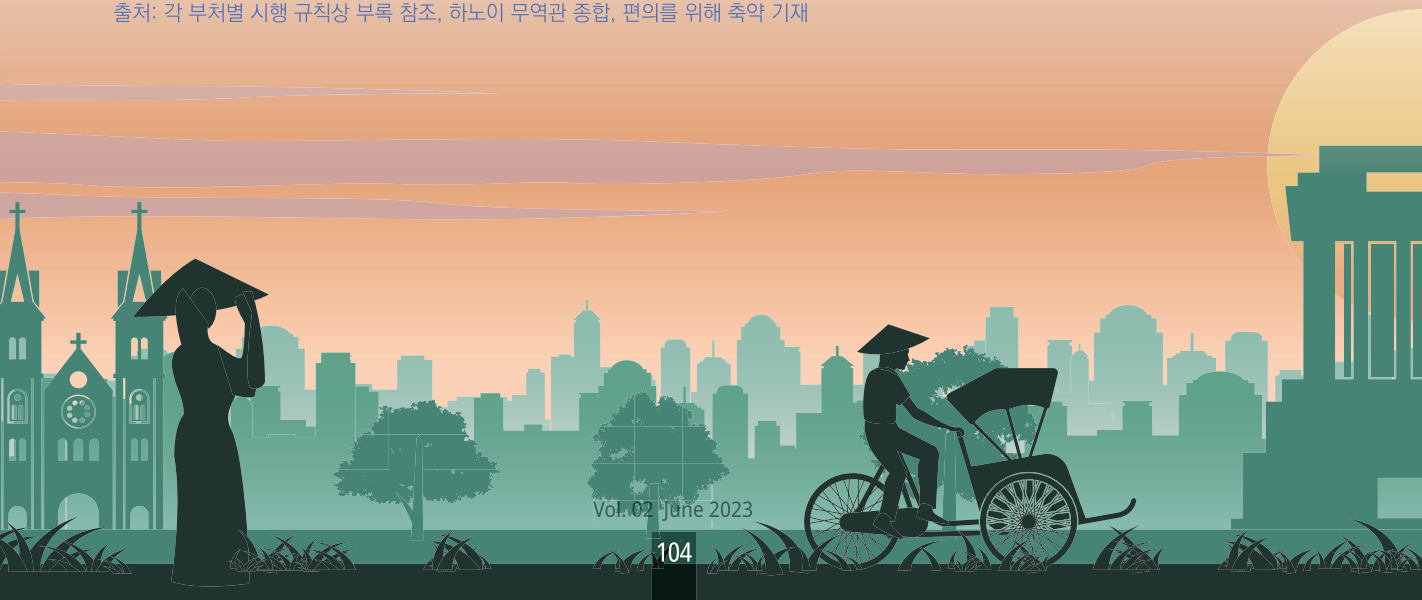
이미지 출처: 28/2012/TT-BKHCN 부록 1

[표 5] 부처별 강제 품질 검사 대상 품목 리스트

관리부서	물품 명세
농촌개발부	- 식물 종자(쌀, 옥수수 등)
	- 동물용 약품, 사료, 해양양식용 사료
	- 제초제 및 농약류
	- 비료, 공업용 소금, 목재용 접착제
	- 농업용 및 농촌발전용 기계설비 등
산업무역부	- 질소 암모니아 연료 및 폭발물
	- 건설용 파이프, 비계, 액화가스용 컨테이너 등
	- 스팀 및 증기 보일러, 중앙제어 보일러
	- 폭발방지 통신장비, 전기 회로 보호 장비, 케이블, 램프 등
교통운송부	- 도로운송수단: 자동차,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등
	- 중장비: 기중기
	- 철도운송수단
건설부	- 시멘트류, 공사용 모래, 연석과 포석, 건설용 유리 및 기타 건설용 원재료

관리부서	물품 명세
공안부	- 투망기, 총기류, 폭탄류, 최루탄, 가스마스크 등
노동보훈부	- 공업용 안전용품: 안전헬멧, 안전화, 팔 보호구, 안면 보호구, 보안경, 산업용 마스크 등
	- 리프트 및 리프트용 안전용구, 에스컬레이터 등
	- 압축 가스 실린더 및 컨테이너
	- 폴리와 호이스트 및 이동 용구
정보통신부	- 무선 송수신 기기
	- 라디오 및 텔레비전 수신기
	- IT장비(컴퓨터, 랩톱, 태블릿)
	- 랩톱, 핸드폰 등의 리튬 배터리
과학기술부	- 가솔린, 디젤유, 바이오연료 및 LPG
	- 오토바이 헬멧
	- 어린이 장난감
	- 온수기, 가정용 전열기, 선풍기, 청소기, 냉장고, 세탁기 등 전기 전자 제품
	- 공사용 철근 및 철강제품,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
	- 엔진용 윤활제
	- LED 제품

출처: 각 부처별 시행 규칙상 부록 참조, 하노이 무역관 종합, 편의를 위해 축약 기재



5 에너지 효율 라벨 강제 품목

베트남 에너지의 경제적, 효율적 사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특정 장비 및 기기의 경우 시장 유통 전에 에너지 효율 라벨 부착이 강제되고 있다.

라벨에는 등급 및 제조사명, 원산지, 에너지 효율 지수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관련 수입자는 현지에서 지정 시험소의 시험을 거친 후 산업무역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인증서를 발행 받은 후에 에너지 효율 라벨 부착이 가능하다.

에너지 효율 라벨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한다.

1) 인증 라벨(Nhan xac nhan): 교통수단, 설비가 같은 종류의 다른 수단보다 높은 효율을 갖춤에 대해 증명하는 것으로, 산업무역부에서 주기적으로 정하는 에너지 효율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제품에 대해 부착 가능.

2) 등급 라벨(Nhan so sanh): 에너지 소비 정도, 사용 에너지의 종류, 출력 정도 등 사용자가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과 비교를 할 때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라벨로써, 5등급으로 구분되어 별이 많을 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임.



[표 6] 04/2017/QĐ-TTg 총리령 규정 에너지 라벨 강제 부착 대상 리스트

구분	명세	참고
가정용 및 산업용 기기 및 장비	- 직관형 형광램프, 컴팩트 형광램프, LED 전구 - 전자기식 및 전자식의 형광램프용 안정기 - 에어컨, 전기 쿠키, 냉장고, 선풍기, 축열식 온수기 - 가로축 및 세로축 세탁기 - 비디오카메라 - 삼상 배전용 변압기, 전동기	 인증 라벨 예시
사무용 및 산업용 기기	- 상업용 냉장고 - 복사기, 프린터 -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등급 라벨 예시
교통운송수단	- 9인승 이하 자동차 - 오토바이와 모페드	





6 마치며

베트남은 GDP 성장률, 인구 증가세 등을 보아 인근 아세안 국가에서도 빠른 성장을 거듭하는 만큼, 수출기업들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시장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지에서 접수되는 기업들의 각종 애로 사항을 보면, 법령 해석의 모호함, 일선 세관의 일관적이지 않은 해석, 정보 불충분 등으로 인해 통관 지연이나 반송 사례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베트남 진출 희망 기업들은 아래 필수 사항들에 대한 다각적인 시장 조사를 통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겠으며 현지 수입자와의 논의를 통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문제 사항에 대해 빠른 해결을 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적인 진출의 시작이 될 것이다.

1. 진출 상품의 HS code
2. 베트남 현지 관세율 정보
3. 제품 수입 요건 및 관련 개별법령에서 다루는 각종 규제 사항
4. 해당하는 경우 임의 인증 취득 필요 여부
5. 수입자의 자격 요건 취득 여부